

가구유형별 기부행태 및 가구 내 기부결정*

송헌재** · 김보민***

논문초록

본 연구는 가구유형별 및 성별에 따라 기부행위 자체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였다. 독신가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선호하는 기부분야가 다르다는 것이 관찰되지만 총소득이 총기부금에 끼치는 한계성향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총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독신가구의 경우에는 성별 간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가구의 경우 가구 소비지출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 배우자의 소득이 남편과 아내의 총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남편과 아내의 학력과 연령으로 대표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이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로부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부부의 협상력이 각자의 총기부금 지출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부결정에 있어서 독신가구와 부부가구 간 차이는 협상력의 유무에 일부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핵심 주제어: 기부, 가구내 분배, 집합모형, 이변량 토빗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H31, D13, C34

투고 일자: 2016. 8. 30. 심사 및 수정 일자: 2017. 1. 24. 게재 확정 일자: 2017. 4. 1.

* 이 논문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를 발전시켰으며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힌다(NRF-2016S1A5A2A03927965).

** 제1저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e-mail: heonjaes@gmail.com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e-mail: bokim@korea.ac.kr

I. 서론

경제학에서는 경제행위의 기본단위를 가구로 정의한다. 대부분의 성인은 결혼을 통하여 가구를 구성하고 한 가구에 소속된 가구원들은 각자 전문화된 영역을 가짐과 동시에 서로 협동하여 가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의 가구원들 간의 선호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청명한 가을날 주말 오후에 남편은 아내와 함께 야구장에 가서 프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남편과 함께 예쁘게 물든 단풍구경을 가기를 원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부부가 같은 시간에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프로야구를 보러 가거나, 단풍구경을 위해 산에 가거나, 혹은 제3의 다른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아무 곳에도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가운데 부부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행위를 관찰하게 된다. 그렇지만 최종 선택에 이르기까지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선호를 관철시키고자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최종 결과는 결국에 각각의 배우자의 협상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즉, 가구원들 사이의 이질적인 선호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관찰하는 가구의 경제행위는 가구원들 간의 협상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구원들 간의 선호의 이질성은 가구의 기부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납부한 기부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며 이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기부행위를 다른 사람의 행복이 경제학에서 효용이라고 불리는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즉 개인에게 효용을 주는 하나의 재화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부부가가구를 생각해보면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선호하는 기부분야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남편과 아내 가운데 누군가는 TV에서 굶주리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도와달라는 캠페인 보고 나서 기꺼이 그들의 후원자가 되려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혹은 그녀의 배우자는 이러한 TV 광고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애초에 남을 돕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을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나 절에 헌금

을 내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부부 사이에 기부행위 자체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혹은 기부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유사한 선호를 보이지만 기부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찰하는 두 명 이상(보통의 경우 남편과 아내 및 자녀들)으로 구성된 가구의 기부행태는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 가구원, 특히 남편과 아내의 협상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¹⁾

한편 개인의 기부행위 혹은 자원봉사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추정식에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고려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강철희, 2007; 강철희·이종은·배민경, 2009; 강철희·변은지·구지윤, 2011; 박태규·윤병호·정진욱, 2008). 그러나 성별의 차이에 따른 기부성향의 선호차이를 주목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성별 차이에 따른 기부성향에 관한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소득이 기부에 끼치는 영향 또는 기부에 관한 세금 감면 혜택이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로 살펴보면서 가구 안의 협상력을 고려하지 않았다.²⁾

이에 따라 성별 및 가구형태의 차이가 기부성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는 편이다. 가구형태 및 가구 안의 협상력이 가구의 총기부액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대표적인 논문은 Andreoni, Brown, and Rischall(2003)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성별 및 가구형태의 차이가 어떻게 가구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처음으로 연구하였다. 기부에 관한 가구 내의 협상력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처음으로 조사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부부가구의 총기부금이 사회적으로 최적화된 결과보다 약 5% 가량 과소 결정되어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는 부부가구 내 협상력이 존재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Yörük(2010)는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이하 PSID)의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앞의 연구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부부가구 내 협상력이 가구의 기부행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였다. 앞의 연구와는 달리 부부가구의 경우 가구

1) 자녀들의 경우 부모에게 실질적인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글의 분석에서 자녀의 기부행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래에 한 자녀만을 두고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선호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녀도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기부행위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에 관한 최신 서베이 논문으로 Andreoni and Payne(2013)이 있다.

내 협상으로 인하여 기부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여주었다. 두 연구 모두 남녀 간의 기부행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후에 독신가구와 결혼가구 사이에 존재하는 기부액 결정식의 차이로부터 협상력의 존재를 검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글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첫째, 과연 성별에 따라 기부행위 자체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신가구만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기부분야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남성 독신가구와 여성 독신가구 각각에 대하여 총기부금 지출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개인의 기부에 대한 선호, 즉 효용함수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더불어 특히 개인의 소득 대비 총기부금의 규모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검토하였다.

둘째, 부부가구의 경우 기부금 지출 결정과정에서 과연 부부의 협상력이 중요한 결정요인인지 여부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별에 따라 독신가구와 비교하여 기부분야별 기부금의 규모 및 비중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일 독신가구의 경우와 대비하여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 중에서 일부는 최소한 부부의 협상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총기부금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각 배우자별 기부금 결정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제로 각 배우자의 협상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dreoni, Brown, and Richall (2003)은 미국의 갤럽에서 조사한 Survey of Giving and Volunteering 설문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 자료는 “Who in your household is considered most involved in deciding which charities your household will give to?”과 같은 질문을 이용하여 가구에서 누가 기부금 사용처와 총기부금을 결정하는지를 식별하였다. Yörük (2010)은 PSID의 부가조사인 The 2002 Wave of the Center on Philanthropy Panel Study을 이용하였고 앞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과 유사한 질문을 이용하여 기부금 사용처 및 기부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체를 식별하였다.

본 연구는 앞의 두 연구와는 달리 가구의 총기부금뿐만 아니라 배우자별 총기부금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협상력을 인위적인 설문을 통하지 않고 고려할 수 있다는 차별성이 있다.³⁾ 이에 따라 독신가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가구

3) 본 연구는 배우자별 기부금액이 따로 조사되어 있는 재정패널을 이용하였다. 재정패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III절에 소개되어 있다.

에 대해서도 각 성별로 기부금 결정식을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독신가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선호하는 기부분야에 대한 차이가 관찰되지만 가구 소득이 총기부금에 미치는 한계적 영향에 있어서는 성별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효용함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총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성별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가구 소비지출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 배우자의 소득이 남편과 아내의 총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남편과 아내의 학력과 연령으로 대표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 또한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Andreoni, Brown, and Rischall (2003) 과 Yörük (2010) 에서 분석할 수 없는 결과이다. 기존의 연구는 기부 결정 주체를 설문을 통해 식별한 후 각 주체별로 총기부액 결정식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협상력을 추정식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⁴⁾ 또한 본 연구는 부부가구에 대해서도 각 성별로 기부금 결정식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이후 남성과 여성의 기부행위의 변화에 대해서 더욱 엄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지출된 기부금에 대한 분석은 독신가구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분석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배우자가 없는 남성과 여성의 독신가구의 경우에는 기부분야에 대한 선호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 간의 협상력과 협상 과정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개인의 기부와 가구의 기부금 지출결정과정을 설명하는 경제모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제Ⅲ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지는 제Ⅳ절에서는 독신가구와 부부가구의 기부금 규모에 대하여 기초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제Ⅴ절은 개인 및 가구의 총기부액 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 방법과 추정 결과를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절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4) 제Ⅴ절에 소개되는 이변량 토빗(Bivariate Tobit)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부부가구 내 남편과 아내의 협상력을 남편과 아내의 기부금 결정식의 두 오차항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 고려하였다.

II. 기부금 지출에 관한 경제 모형

1. 개인의 기부금 결정 모형

경제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결정은 효용극대화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재 모형 또는 비순수 이타 모형에서처럼 기부금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 소비 모형에 근거한 효용함수를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예산제약에 직면한 개인의 효용극대화 문제는 아래의 식 (1)과 같다.

$$\begin{aligned} & \text{Max } U(c, g) && (1) \\ & \text{s.t. } c + g = m, \quad g \geq 0. \end{aligned}$$

위의 모형에서 예산제약식에 포함된 g 와 c 는 각각 기부금과 기부금을 제외한 소비지출을 의미하고, m 은 소득이다.⁵⁾ 이 모형은 개인의 노동공급의사결정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 여가(leisure)는 개인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화로서 작용하지만 기부에 관한 효용극대화 과정에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분리성(separability)을 가정한다.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 성립해야 한다.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g 와 c 모두 내부해(interior solution)를 갖는다. 그러나 만일 개인의 소비에 대한 한계효용이 기부로부터 얻는 한계효용보다 클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하여 모서리해(corner solution)가 발생할 수 있다.⁶⁾ 이러한 경우 개인의 기부금 지출금액은 0이 된다. 즉,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5)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혹은 세액 공제의 형태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만일 소득공제 형태로 혜택이 부여된다면 기부금의 가격은 1이 아니고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개인 i 의 한계세율이 t_i 이면 i 의 기부가격 p_i 는 $1 - t_i$ 가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기부금의 세제혜택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그러므로 식 (1)의 모형은 기부금을 납부한 개인의 소득이 면세점 이하여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법으로 정한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기부처에 기부한 경우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6) 효용극대화 수준에서 개인의 소비는 언제나 0보다 크기 때문에 c 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개인을 가정하면 기부금을 지출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모서리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가구의 기부금 결정 모형: 집합모형(Collective Model)

효용극대화 원리를 기본으로 한 기혼 부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모형 중에 가장 단순한 모형은 부부가 정확하게 동일한 선호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가구의 모든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의 사결정을 단일의사결정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단일모형은 부부 중 누가 소득을 얻는지 관계없이 총소득이 같으면 동일한 지출유형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이러한 단순한 의사결정과정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단일의사결정모형의 대안으로 집합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⁷⁾ 본 모형은 부부가구에서 남편과 아내의 선호가 다른 경우 가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제모형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론연구 및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방식의 경제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⁸⁾ 집합모형은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 부부의 협상력에 따라 가구의 최종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부부는 다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에 직면한다. 아래의 집합모형에서도 개인의 기부모형과 마찬가지로 여가에 대한 분리성 가정을 적용하여 가구의 노동공급에 관한 의사결정은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

$$\begin{aligned} & \text{Max } \mu(Z)u^h(c_h, g_h) + (1 - \mu(Z))u^w(c_w, g_w) & (2) \\ & \text{s.t. } c_h + c_w + g_h + g_w = m, g_h \geq 0, g_w \geq 0. \end{aligned}$$

위의 최적화 문제에서 u^h 와 u^w 는 소비와 기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효용함수를 의미한다. 즉, 남편은 자신의 소비 c_h 와 자신이 선호하는 기부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총기부금을 배분하여 g_h 만큼 기부함

7) Browning et al. (1994) 이후 집합모형은 실증적으로 많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집합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Browning, Chiappori, and Weiss(2014)를 참조하기 바란다.

8)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는 Lee(2007)와 Ham and Song(2014)의 연구 정도를 찾을 수 있다.

으로써 효용을 얻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효용함수를 구성한다. 집합모형은 남편과 아내 각자의 선호를 나타내는 효용함수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이루어진 가구효용함수를 부부가 함께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위 식에서 μ 는 가구효용함수에서 남편의 선호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남편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 - \mu)$ 는 아내의 협상력을 나타낸다.

위 식에서 Z 는 남편과 아내의 협상력(μ)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의미한다. Z 에는 만일 협상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가진 힘이 서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서 결혼관계가 해체될 경우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외부옵션 가치(독신으로서의 삶과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예를 들어, 나이, 학력, 외모, 노동시장에서 임금률 및 집안 배경 등)을 포함한다.⁹⁾

개인의 기부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부는 가구효용함수의 극대화과정에서 c_h , c_w , g_h , g_w 의 한계효용이 균등해지도록 가구 소득(m)을 배분한다.¹⁰⁾ 만일 g_h 혹은 g_w 의 한계효용이 c_h , c_w 의 한계효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0으로 관찰되는 모서리해가 발생할 수 있다.

Ⅲ.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구축하여 제공하는 재정

9) 외부옵션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부부 각각의 효용함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효용함수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협상력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집합모형을 온전히 식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협상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야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지역별 남녀의 성비 변수라든가 결혼과 이혼에 관한 지역별 법률적 차이 혹은 배우자 각각의 소득변수가 주로 활용되었다.

10) 식 (2)의 최적화 문제에서 기부금에 대한 균형조건은 $\mu(Z)MU^h(g_h) = (1 - \mu(Z))MU^w(g_w)$ 와 같다. 여기서 $MU^h(g_h)$ 와 $MU^w(g_w)$ 는 각각 남편과 아내의 기부로부터 얻는 한계효용을 의미한다. 남편의 협상력이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균형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MU^h(g_h)$ 가 줄어들어야 한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성립하는 한 $MU^h(g_h)$ 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남편의 기부금이 증가해야 하므로 집합모형에 의하면 특정 배우자의 협상력이 증가하면 가구 소비지출에 있어서 그 배우자의 선호가 더욱 크게 반영된다.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재정패널은 2008년에 구축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2년까지 5개 연도의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2008년 원표본 유지율이 79.9%에 이를 정도로 매우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패널 데이터이다.¹¹⁾

재정패널은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조사와 가구원으로 인정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원조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조사항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가구조사에서 가구원의 인적현황·주택 및 자동차 보유현황·가계지출현황·이전지출 및 이전소득·복지현황·자산 및 부채현황을 조사하고, 가구원조사에서 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연금 및 보험지출현황·연간 소득·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소득세 납부유형과 소득공제현황을 조사한다.¹²⁾

이와 같이 재정패널에서는 가구원조사 설문에서 가구원별 소득원천(근로소득·금융소득·부동산 임대소득·연금소득 등)에 따른 소득을 별도로 조사하고 이를 합산하여 개인의 연간소득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개별 가구원들의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소득 변수를 구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¹³⁾

특히 재정패널은 1차년도 조사부터 가구설문에서 전년도 1년간 가구원의 기부금 지출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매우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구조사 설문지에서 전년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험이 있는지 묻고, 있다면 가구원 중 누가 어느 분야에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질문한다. 기부금에 대한 지출은 가구원별로 소득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단체에 정기적으로 내는 헌금이나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내는 성금 등 기부의 성격이 있는 금액은 모두 조사된다. 재정패널에서는 기부금을 ①정당, ②교육기관, ③사회복지기관, ④문화예술, ⑤종교, ⑥기타의 분야로 분류하여 조사하는데 한 가구원이 같은 분야에 해당하는 두 개 이상의 기관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합쳐서 조사하고, 여러 분야에 기부를 하였다면 각각의 경우를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11) 제Ⅲ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사업팀의 『1~5차 재정패널 조사 사용자안내서』를 발췌·요약하였다. 재정패널의 조사대상 가구는 제주도·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일반가구로 2008년 구축된 가구인 5,014가구와 2009년에 구축된 가구인 추가표본 620가구, 2009년 이후 분가하여 1차년도 이후부터 신규로 발생한 분가가구이다.

12) 모든 조사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의 전년도 정보에 대하여 설문한다. 단, 가구원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다.

13) 가구조사 설문에서는 가구 소득의 구간을 묻는 간단한 질문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조사 설문결과로부터는 가구 소득 수치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가구원별로 재정패널에서 분류한 기부분야에 대하여 어떠한 선호를 갖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재정패널의 기부금 조사는 2001년부터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에서 구축하고 있는 Giving Korea¹⁴⁾ 자료와 비교하여 크게 두 가지 다른 점이 관찰된다. 첫째, 조사되는 기부금 지출은 개인이 아닌 기관에 기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가까운 이웃·친지·친구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는 조사되지 않는다. 둘째, 종교분야로 기부한 경우 순수 종교운영 목적의 헌금 및 보시와 종교기관을 통한 자선적 기부금을 구분하지 않는다. 즉, 종교분야의 기부금 지출의 경우 두 가지 목적의 기부금이 혼합되어 있다.¹⁵⁾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재정패널에서 조사한 모든 가구에서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로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미혼가구와 사별 및 이혼 가구를 포함하여 배우자가 없는 독신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기부금 지출에 대하여 분석하고, 부부가구의 경우 가구주와 배우자 각각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재정패널 1차년부터 5차년도까지 모든 자료를 합한 혼합(pooling) 자료를 적용하였다. 패널 데이터의 특성상 동일한 가구와 개인이 여러 번 관측되는 현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초통계와 회귀분석에서는 개인 혹은 가구의 아이디로 군집(clustering) 한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보고하였다.

IV. 성별 및 가구 유형별 기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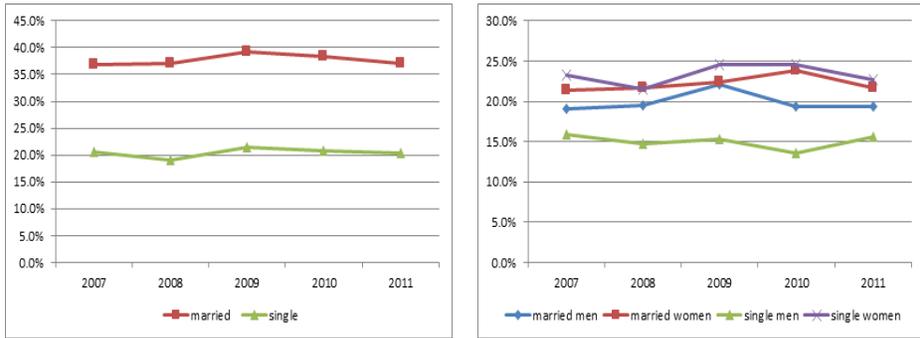
〈Figure 1〉은 연도별 기부행태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독신가구보다 부부가구가 기부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가구 중 대략 40%의 가구가 기부를 하는 것에 비하여 독신가구는 약 20%만이 기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기부를 하면 그 가구의 경우 기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

14) Giving Korea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beautifulfund.org> 를 참조하기 바란다.

15) 재정패널은 또한 가구원조사에서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했는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조사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와 종합소득신고자에게는 항목별로 소득공제현황을 조사하였는데 해당 항목으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실제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총공제금액을 적도록 하고 있어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기부금공제를 받은 금액만 알 수 있다.

다. 성별 및 혼인 상태별로 분류하면 좀 더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다. 비혼남의 기부비율은 다른 유형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당히 높은 비율로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있는 여성 그룹이 가장 높은 비율로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결혼을 하면 15%에서 20%로 기부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결혼을 한 여성보다는 여전히 기부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결혼여부와 기부행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결혼과 상관없이 약 4분의 1이상의 여성이 지속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 Percentage of Charitable Giving Behav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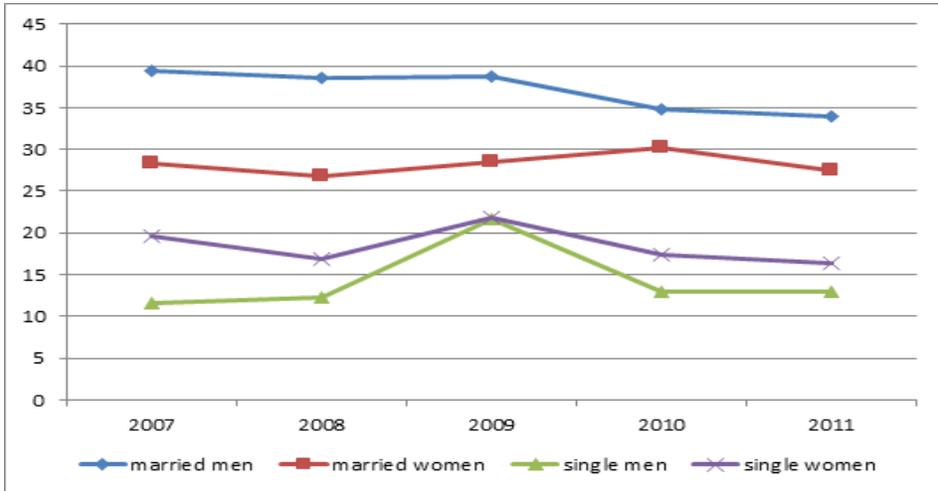


(a) Comparison by Household Type

(b) Comparison by Gender and Marital Status

기부행위 여부 외에 유형별 기부 금액을 조사하는 것 역시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Figure 2〉). 전반적으로 결혼한 개인이 결혼을 하지 않은 개인보다 기부 금액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결혼을 하면 매우 극적으로 기부 금액을 늘린다. 이는 남성의 경우 결혼을 하면 평균적으로 기부를 자주 하게 되고 기부액 역시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증가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 원인에 대하여 별도로 분석할 만한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여성의 경우 결혼 이후 기부금액을 약 1.5배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2009년도에 독신 남성의 평균 기부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한 부분을 들 수 있다.

〈Figure 2〉 Amount of Charitable Giving: Comparison by Gender and Marital Status



Note: 1. Amount of charitable giving is in real 2010 KRW.
 2. Average charitable giving includes zero amount.

1. 독신가구

〈Table 1〉은 독신가구의 기부분야별 기부금 지출 현황을 요약하고 있다. 이 표에는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기부금을 전혀 지출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기부분야별 평균 기부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독신가구의 경우 기부금 지출결정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협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표의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기부분야에 대한 평균적인 선호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부금액의 평균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이분산성을 가정하는 경우 10%의 유의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평균기부금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지만 5%의 유의수준에서 위의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¹⁶⁾ 그러나 가구 소득대비 총기부금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남성가구주의 경우 0.61%, 여성가구주의 경우 1.64%를 차지하여 여성들의 평균기부성향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기부금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구 소득에 대한 한계기부성향의 차이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소득의 증가가 기부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한계기부성

16) P-value=0.0635.

향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회귀모형을 추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론했던 제V절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한편, 세부 기부분야별로 살펴보면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정당과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부를 더욱 많이 하는 경향이 관찰되는 반면에 기부금 총액대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종교기부금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기부분야에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Table 1〉 Summary Stat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 Amount Given to Specific Charities, Total Contributions, and Household Income

Category	Male	Female
Political Parties	0.38 (0.32)	0.03 (0.02)
Education	0.06 (0.04)	0.12 (0.05)
Human Services	1.46 (0.31)	1.04 (0.25)
Art, Culture, and Humanities	0.05 (0.05)	0.02 (0.02)
Religious Organizations	12.0 (3.3)	17.1 (1.8)
Other	0.26 (0.10)	0.11 (0.04)
Total Contributions	14.2 (3.4)	18.4 (1.9)
Individual Income	2,345 (74.4)	1,606 (47.3)
Number of Households	645	1,102
Number of Observations	2,108	3,956

- Note: 1. Average contributions are calculated including zero amount.
 2. Contributions and household incomes are in real (2010) ₩10,000.
 3. Robust standard errors are clustered by individual id, and they are reported in parentheses.

Sourc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1st, 2nd, 3rd, 4th, 5th waves).

2. 부부가구

〈Table 2〉는 부부가구의 기부분야별 기부금 지출 현황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

다. 결혼한 부부가구의 경우 남편의 기부금 총액이 아내의 기부금 총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또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재정 패널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각 가구원의 개인소득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각각 남편과 아내의 개인소득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거의 다섯 배에 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개인소득 차이와 비추어 볼 때 기부금 총액의 차이는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Table 2〉 Summary Statistics of Couples: Amount Given to Specific Charities, Total Contributions, and Individual Income

Category	Husband	Wife
Political Parties	0.42 (0.09)	0.11 (0.04)
Education	0.80 (0.33)	0.25 (0.08)
Human Services	4.67 (0.45)	1.91 (0.21)
Art, Culture, and Humanities	0.16 (0.06)	0.09 (0.05)
Religious Organizations	30.5 (1.8)	25.7 (1.3)
Other	0.63 (0.12)	0.21 (0.04)
Total Contributions	37.2 (2.0)	28.2 (1.3)
Individual Income	3,468 (45.5)	619 (17.2)
Number of Households	4,542	4,542
Number of Observations	18,336	18,336

Note: 1. Average contributions are calculated including zero amount.

2. Contributions and household incomes are in real (2010) ₩10,000.

3. Robust standard errors are clustered by individual id, and they are reported in parentheses.

Sourc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1st, 2nd, 3rd, 4th, 5th waves.

기부분야별 평균 기부금액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남편의 기부금 평균이 아내보다 높게 나타나서 독신가구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독

신가구와 달리 부부가구의 경우 기부금 지출결정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협상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Table 2>의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기부분야에 대한 선호만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부부가구의 기부금 지출이 배우자 개인의 선호뿐만 아니라 부부의 협상의 결과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Table 1>과 <Table 2>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부자의 성별에 따른 기부성향과 기부분야 선호의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구유형별 기부행태 분석에 보다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V. 실증 분석

1. 추정 모형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개인 및 가구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추정모형으로 모서리해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토빗(Tobit) 모형을 적용하였다. 즉, 데이터에 0의 기부금이 관찰되는 경우 이 또한 효용극대화 결과로 이해한다.

독신가구의 경우 기부금 결정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¹⁷⁾ 아래 식 (3)의 우변에 포함된 z_{it} 는 개인 i 의 선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가구 순자산 변수를 포함한다.

$$g_{it} = \max(0, \beta_0 + \beta_1 m_{it} + z_{it}\gamma + u_{it}), \quad t = 1, \dots, T \quad (3)$$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남편의 기부금과 아내의 기부금이 한 가구에서 동시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추정모형으로 아래와 같이 이변량 토빗(Bivariate Tobit) 모형을 적용하였다. 즉, 아래 식 (4)에 포함된 오차항 u^h 와 u^w

17) 본 연구는 추정모형에 혼합 자료를 적용함으로써 패널 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한 단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부부가구의 기부금 결정모형으로 이변량 토빗(Bivariate Tobit) 모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발전된 계량모형으로 임의효과 이변량 토빗(Random Effects Bivariate Tobit)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정 아래 남편의 기부금 결정식과 아내의 기부금 결정식을 동시에 추정하였다.

$$\begin{aligned}
 g_{it}^h &= \max(0, \beta_0^h + \beta_1^h hm_{it} + \beta_2^h wm_{it} + \beta_3^h hhm_{it} + z_{it}^h \gamma_1^h + z_{it}^w \gamma_2^h + u_{it}^h), \\
 t &= 1, \dots, T, \\
 g_{it}^w &= \max(0, \beta_0^w + \beta_1^w hm_{it} + \beta_2^w wm_{it} + \beta_3^w hhm_{it} + z_{it}^h \gamma_1^w + z_{it}^w \gamma_2^w + u_{it}^w), \\
 t &= 1, \dots, T.
 \end{aligned} \tag{4}$$

위 식에서 hm_{it} 와 wm_{it} 는 각각 i 가구의 t 시점에 남편과 아내의 개인소득을, hhm_{it} 는 가구총소득을 의미한다. 즉, 위의 추정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가구의 총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각각 본인과 배우자의 기부금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추정할 수 있다. 만일 배우자의 협상과정이 존재하지 않다면 개별 배우자의 기부금액은 가구 총소득만의 함수가 될 것이다. 즉, 가구 총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 배우자의 소득은 개별 배우자의 기부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추정식에 가구 소득과 개별 배우자의 소득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이러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이 때 배우자의 기부금 결정모형에서 부부의 협상이 중요하지 않다면 가구의 총소득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가구 소득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반면에 hm_{it} 와 wm_{it} 변수에 유의한 결과가 추정된다면 각 배우자가 가구 소득에 기여하는 정도가 남편과 아내의 기부금 지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부부가구의 기부금 결정에서 부부의 협상이 중요한 고려요인임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추정식에 포함된 z_{it}^h 와 z_{it}^w 는 남편과 아내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로 구성된 벡터를 나타낸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부부의 협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배우자의 학력과 나이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남편 부모와 아내 부모에게 소득이 전을 실행하는 부부가구의 모형을 구조모형 추정방법(structural estimation)을 적용하여 추정한 Ham and Song (2014)에서는 배우자의 학력과 나이가 협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경우 개인의 기부에 대한 선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식 (4)와 같은 선형모형에서는 추정

결과에 두 가지 효과가 함께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독신가구의 추정결과와 비교하여 구조적인 차이가 발견된다면 이는 협상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크다고 생각된다.

2.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

가구유형별로 추정식에 포함된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먼저 분석에 포함된 독신가구의 경우에 남성가구주의 학력을 나타내는 교육연수가 여성가구주에 비해 약 4년 정도 높은 반면에 연령은 8세 정도 낮은 젊은 가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결과적으로 <Table 1>에 가구 소득의 차이를 가져온 유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Single-person Household		Couple Household	
	Male	Female	Husband	Wife
Years of Schooling	12.00 (0.17)	7.91 (0.17)	12.73 (0.06)	11.65 (0.06)
Age	46.25 (0.67)	57.96 (0.55)	50.20 (0.20)	47.01 (0.20)
Number of Household Members	1.73 (0.04)	1.70 (0.03)	3.45 (0.02)	3.45 (0.02)
Annual Individual Income (in Ten Thousand Million Won)	2,345 (74.4)	1,606 (47.3)	3,468 (45.5)	619 (17.2)
Net Asset of Household (in Million Won)	90.0 (7.4)	84.3 (4.8)	246.8 (5.2)	246.8 (5.2)
Monthly Consumption of Household (in Ten Thousands Won)	113.9 (2.7)	95.4 (2.3)	216.5 (1.8)	216.5 (1.8)
Residence in Seoul Metropolitan Area	0.351 (0.021)	0.364 (0.016)	0.451 (0.008)	0.451 (0.008)
Number of Households	645	1,102	4,542	4,542
Number of Observations	2,108	3,956	18,336	18,336

Note: 1. Some variables have missing values.

2. Net asset and monthly consumption are in real(2010).

3. Robust standard errors are clustered by individual id, and they are reported in parentheses.

Sourc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1st, 2nd, 3rd, 4th, 5th waves).

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구 순자산과 월평균 소비지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동일한 패턴이 관찰된다. 그러나 수도권 거주비율은 독신가구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교육연수에 있어서 약 1년 정도의 차이만이 관찰되는데 이는 결혼시장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동질혼의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부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구원의 전문화를 통한 분업의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과 순자산 및 소비지출의 규모가 독신가구의 합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Table 3> 역시 이러한 경향이 잘 반영되어 있다.

3. 추정 결과

1) 독신가구

<Table 4>는 독신가구에 대하여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추정식 (3)의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학력과 연령이 기부금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 역시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의 경우 높은 학력일수록 이타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연령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¹⁸⁾

특히 가구 소득 변수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기부금 결정식에서 추정계수의 크기가 같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¹⁹⁾ <Table 1>에서 보인 평균기부성향의 차이가 바로 한계기부성향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모형의 추정결과는 기부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결과 가구 소득의 증가로 인한 기부금 증가의 효과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부에 대한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학력과 연령 및 가구원수 변수의 경우에도 추정계수의 크기에서 성별에 따른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도 같다

18) 연령변수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종교를 가질 확률이 높아져서 종교기부금의 영향이 발현된 결과라는 대안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패널 자료에 종교 유무를 묻는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할 수 없었다.

19) P-value=0.4003.

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즉 교육연수와 연령 및 가구원수의 추정계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결합검정(joint test)을 해 본 결과 기각할 수 없었다.²⁰⁾ 이는 독신가구의 경우 성별에 따른 한계기부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한 Andreoni, Brown, and Rischall(2003)와는 다른 결과이다.

〈Table 4〉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by Single-Person Household: Tobit Estimation

	Male	Female
Years of Schooling	12.94*** (4.25)	10.28*** (2.01)
Age	2.27** (0.89)	2.83*** (0.58)
Number of Household Members	-12.90 (10.87)	-7.66 (6.17)
Household Income	0.026*** (0.009)	0.018*** (0.004)
Net Asset of Household	-0.0005 (0.0005)	0.0015*** (0.0004)
Residence in Seoul Metropolitan Area	-32.11 (21.29)	-31.45** (14.01)
Constant	-493.7*** (103.1)	-399.7*** (56.8)
Number of Households	634	1,087
Number of Observations	2,020	3,830
Log-pseudolikelihood	-2,462.35	-6,968.61

- Note: 1. *** $p < 0.01$, ** $p < 0.05$, * $p < 0.1$.
 2. Robust standard errors are clustered by individual id, and they are reported in parentheses.
 3. Dependant Variables are total contributions(in ten thousands won).
 4. Estimation equations include year dummies, but the estimated coefficients are not reported.

그러므로 〈Table 1〉의 내용과 〈Table 4〉의 추정결과들을 종합하면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기부분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총기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20) P-value=0.6376.

는 한계기부성향의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남성과 여성의 총기부 금액의 차이는 전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기질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가구 순자산 변수와 수도권 거주 더미변수의 경우에는 여성의 기부금 규모에만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의 경우 경제적 요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차별성이 있으며 이는 보다 위험기피적인 여성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해 볼 여지는 남아있다.

2) 부부가구

〈Table 5〉는 부부가구의 남편과 아내의 총기부금 추정식 (4)의 결과를 보여준다. 추정할 때 가구 소비 대신 가구의 소비지출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식 (4)에서 가구 소득과 개별 배우자들의 소득을 동시에 통제하면 가구 소비와 개별 배우자 사이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가구 소득 대신에 가구 소득의 함수인 가구 소비지출 변수를 추정식에 포함하였다.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독신가구의 추정결과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가구 소비지출을 통제할 때 상황에 따라 각 배우자의 소득이 기부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 내 협상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남편의 기부금의 결정식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개인 소득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추정계수의 크기에 있어서는 자신의 소득의 영향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아내의 기부금 결정식에서는 아내 자신의 소득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가구 소득의 소득원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각각의 배우자의 선호를 실현하는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¹⁾

21) 부록에 있는 〈Table A1〉는 아내가 임금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맞벌이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나누어서 모형 (4)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남편의 소득만이 남편의 기부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아내의 경우 자신의 소득이 유일하게 자신의 기부금액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Table 5〉의 결과를 더욱 강하게 뒷받침한다. 다만 남편만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아내의 기부금은 남편과 자신의 소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부 각각의 소득은 오로지 남편의 기부금액에 유의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홑벌이 가구에서 남편이 자신의 기부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소득뿐만 아니라 아내의 소득까지 이용하므로 남편의 가구 내 협상력이 매우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혹은 아내의 근로여부가 가구의 기부결정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대안적 해석도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가구의 노동공급이 기부금 결정과정에 분리되어 작용한다는 본 연

<Table 5>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by Couples: Bivariate Tobit Estimation

	Husband	Wife
Husband's Years of Schooling	33.13*** (3.90)	10.86*** (2.10)
Wife's Years of Schooling	1.54 (3.66)	6.38*** (2.15)
Husband's Age	0.65 (2.16)	0.34 (1.31)
Wife's Age	2.18 (2.27)	4.08*** (1.42)
Husband's Income	0.020*** (0.004)	0.002 (0.002)
Wife's Income	0.009** (0.005)	0.030*** (0.004)
Monthly Consumption of Household	0.243*** (0.070)	0.270*** (0.048)
Number of Household Members	-11.83 (7.69)	-0.66 (5.17)
Net Asset of Household	0.0002 (0.0002)	0.0001 (0.0001)
Residence in Seoul Metropolitan Area	-54.02*** (15.54)	-23.78** (10.51)
Constant	-1,049.0*** (89.4)	-740.6*** (61.6)
Number of Households	4,471	
Number of Observations	17,546	
Log-pseudolikelihood	-62,513.81	

Note: 1. *** $p < 0.01$, ** $p < 0.05$, * $p < 0.1$.

2. Robust standard errors are clustered by individual id, and they are reported in parentheses.

3. Dependant Variables are total contributions (in ten thousands won).

4. Estimation equations include year dummies, but the estimated coefficients are not reported.

구의 가정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을 제공한다. 혹은 송헌재 (2013)가 지적했듯이 소득공제 목적으로 아내의 기부행위가 남편의 기부행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와 홑벌이 가구의 기부금 결정과정 및 이를 식별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의 크기와 유의성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의 기부금 결정식에 있어서 비대칭의 결과가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의 경우 자신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내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에 세 배에 달하는 반면에 아내의 학력은 오직 자신의 기부금 지출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령 변수의 경우에도 오직 아내의 연령만이 자신의 기부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독신가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dreoni, Brown, and Rischall (2003)의 연구를 인용하면 부부사이의 협상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남편이 기부행위를 결정하는 주체인 가구의 경우 남편의 학력만이 기부금 액수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아내가 결정하는 주체인 경우에는 아내의 학력만이 기부금 액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면 남편의 기부행위에는 아내의 학력이 영향이 없지만 아내의 기부행위에는 남편의 학력과 아내의 학력이 모두 영향을 끼치고 오히려 남편의 학력이 아내의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남성이 기부행위에 있어서 더 많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다만 인구통계학 변수의 경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개별 배우자의 협상력뿐만 아니라 선호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정결과를 배우자의 협상력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부부 각각의 기부금액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염두에 둔다면 부부가구에서의 남녀의 기부금 결정행위는 독신가구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VI.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기부금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선호의 차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가구의 총 기부금 지출결정과정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은 각자 선호하는 기부분야, 즉 기부의 우선순위에 차이를 보인다. 둘째,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한계기부성향과 총기부금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선호체계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셋째,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자료에서 관측되는 개별 배우자의 기부금이 부

부 사이의 협상의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협상력이 높을수록 가구의 기부금 지출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선호가 더욱 많이 반영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이기도 하다. 즉,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기부분야의 차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가구 안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갖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기부행위 결정모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경제모형을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기본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앞으로 가구의 기부행위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이루어진다면 가구의 기부결정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또한 기부금 모집기관 및 단체의 기부금 모집 전략에도 보다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가구의 기부금 관련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진행되어 학문적 발전과 더불어 기부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는 정책개발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글을 맺는다.

■ 참고 문헌

1. 강철희,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3호, 2007, pp.5-32.
(Translated in English) Kang, Chul-Hee, “An Exploration on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Focus on the Relationship with Trus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9, No. 3, pp.5-32.
2. 강철희·변은지·구지윤, “기부영역 선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 사회복지영역과 비사회복지영역 및 비기부 집단의 비교,” 『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1호, 2011, pp.247-276.
(Translated in English) Kang, Chul-hee, Angie Byun, and Ji-young Ku, “An Exploration of Choice Behavior of Giving Target Areas in Korea: A Comparison Among Area Related to Social Welfare, Area Related to Non-social Welfare, and Non-giving,” *Social Welfare Policy*, Vol. 38, No. 1, pp.247-276.
3. 강철희·이종은·배민경, “우리나라 시민의 유산기부의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2호, 2009, pp.5-32.
(Translated in English) Kang, Chul-hee, Jong Eun Lee, and Min Kyung Bae, “An Exploratory Study on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in Korea,” *Social Welfare Policy*, Vol.

36, No. 2, pp.5-32.

4. 박태규 · 윤병호 · 정진욱,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제1권 제3호, 2008, pp.79-100.

(Translated in English) Park, Tae Kyu, Byung Ho Yoon, and Jinook Jeong,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Frequency of Charitable Giving,”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Vol. 1, No. 3, pp.79-100.

5.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재정학연구』, 제6권 제4호, 2013, pp.151-178.

(Translated in English) Song, Heonjae, “Price Elasticity Estimation of Charitable Giving for the Wage Earners in Korea Using 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Panel Data,”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Vol. 6, No. 4, pp.151-178.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사업팀, 『1~5차 재정패널 조사 사용자안내서』, 2013.

(Translated in English)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User's Guide (Wave 1-5):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2013.

7. Andreoni, James, Eleanor Brown and Isaac Rischall, “Charitable Giving by Married Couples: Who Decides and Why Does It Matter?,”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38, No. 1, pp.111-133.

8. Andreoni, James and A. Abigail Payne, “Charitable Giving,”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5, 2013, pp.1-50.

9. Browning, Martin, Francois Bourguignon, Pierre-Andre Chiappori, and Valerie Lechene, “Income and Outcomes: A Structural Model of Intrahousehold Allo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2, 1994, pp.1067-1096.

10. Browning, Martin, Pierre-André Chiappori and Yoram Weiss, *Economics of the Famil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11. Ham, John C. and Heonjae Song, “The Determinants of Bargaining Power in an Empirical Model of Transfers between Adult Children, Parents, and In-Laws for South Kore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09, 2014, pp.73-86.

12. Lee, Jungmin, “Marriage, the Sharing Rule, and Pocket Money: The Case of Sou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55, 2007, pp.557-581.

13. Yörük, Barış K., “Charitable Giving by Married Couples Revisited,”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45, No. 2, 2010, pp.497-516.

[부 록]

〈Table A1〉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by Couples: Bivariate Tobit Estimation

	(1) Wives work		(2) Wives do not work	
	Husband	Wife	Husband	Wife
Husband's Years of Schooling	30.55*** (7.83)	13.50*** (3.61)	33.74*** (4.34)	9.83*** (2.46)
Wife's Years of Schooling	9.67 (6.40)	4.46 (3.62)	-1.51 (4.13)	7.44*** (2.59)
Husband's Age	5.38 (3.40)	0.52 (2.01)	-1.29 (2.50)	0.23 (1.65)
Wife's Age	-1.30 (3.56)	3.51* (2.12)	3.48 (2.65)	4.62** (1.81)
Husband's Income	0.024*** (0.008)	0.002 (0.002)	0.019*** (0.004)	0.002 (0.002)
Wife's Income	0.003 (0.006)	0.026*** (0.005)	0.047** (0.023)	0.008 (0.013)
Monthly Consumption of Household	0.363*** (0.123)	0.158*** (0.059)	0.205** (0.083)	0.316*** (0.067)
Number of Household Members	-22.52* (12.36)	4.03 (7.67)	-6.36 (9.38)	-4.09 (6.58)
Net Asset of Household	0.0000 (0.0004)	0.0004 (0.0004)	0.0004 (0.0002)	0.0000 (0.0001)
Residence in Seoul Metropolitan Area	-50.08** (24.63)	-35.48* (18.72)	-55.59*** (18.55)	-16.81 (12.09)
Constant	-1,133*** (174.4)	-719.9*** (90.8)	-1,006*** (102.2)	-758.3*** (77.3)
Number of Households	1,908		3,628	
Number of Observations	5,293		12,253	

Note: 1. *** p<0.01, ** p<.05, * p<0.1.

2. Robust standard errors are clustered by individual id, and they are reported in parentheses.

3. Dependant Variables are total contributions(in ten thousands won).

4. Estimation equations include year dummies, but the estimated coefficients are not reported.

Charitable Giving by Household Types and its Decision in Intra-household Allocation*

Heonjae Song** · Bo Min Kim***

Abstract

We examine how charitable giving is influenced by gender and household type. Looking first at single-person households, we find men and women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tastes for giving, but do not observe a difference in marginal propensity to contribute. No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in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ovariates on total contributions between them. For the case of couples,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and education seem to affect differently on total contributions between husband and wife. Husband's marginal propensity to contribute depends on only his income, while wife's marginal propensity to contribute depends on both her income and her spouse's. Our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there can be bargaining power over charitable giving between husband and wife. It can partly explain different patterns of charitable giving behaviors betwee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couples. Our results give new insights into both the demographics of charitable giving and the costliness of household bargaining.

Key Words: charitable giving, intrahousehold allocation, collective model, bivariate tobit

JEL Classification: H31, D13, C34

Received: Aug. 30, 2016. *Revised:* Jan. 24, 2017. *Accepted:* April 1, 2017.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A2A03927965).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Seoul, 163, Seoulsiripdae-ro, Dongdaemun-gu, Seoul 02504, Korea, Phone: +82-2-6490-2068, e-mail: heonjaes@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Phone: +82-2-3290-5213, e-mail: bokim@korea.ac.kr